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갱신신고에 대한 질의응답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22. 1월)

Q1. 어떤 제품이 갱신신고 대상인가요?

- 확인결과서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제품중에서 계속하여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대표/파생)이 대상입니다. 다만, 유효기간 이후 제조 또는 수입하지 않을 제품은 갱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갱신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갱신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결과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므로, 해당 신고번호를 사용한 제품을 더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실 수 없습니다.

Q3. 갱신을 위한 시험검사는 언제까지 다시 받아야 하나요?

- 기 신고제품의 확인결과서의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 90일 이내에 적합 확인결과서를 다시 발급받으면 됩니다.
- 기 확인결과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갱신용 확인결과서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제품으로 신고하시어 신규 신고번호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Q4. 갱신을 위한 시험검사는 기존 대표제품과 반드시 같은 시험검사기관을 이용해야 하나요?

- 기존 대표제품과 신고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하려면 같은 시험검사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시험검사기관이 바뀌면 새로운 대표제품으로 신고하시어 신규 신고번호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Q5. 기존 대표제품과 안전기준 물질이 달라진 경우(사용물질 추가, 보존제 변경, 사용가능 주성분 변경 등)에 갱신 신고 가능한가요?

- 기존 대표제품과 안전기준이 달라지 경우는 갱신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제품으로 신고하시어 신규 신고번호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Q6. 기존 대표제품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갱신 신고접수가 가능한가요?

- 기존 제품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갱신용 확인결과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확인완료일부터 30일(영업일기준)까지는 신고접수 가능합니다. 행정처리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존 대표제품의 확인결과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갱신신고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Q7. 파생제품 갱신신고는 언제해야 하는가요?

- 파생 제품의 갱신 신고는 대표제품 갱신신고가 완료되는 시점에 바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파생제품은 대표제품의 확인결과서로 갈음하기 때문에 대표제품 확인결과서의 확인완료일부터 30일까지 갱신 신고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